

공고 제 5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17일

을지로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방 *근	방 *근 1967-06-30	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(저동2가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2-17